

디스플레이 제조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전신홍반루푸스

성별 여성

(나이) 23세

(직종) 디스플레이 제조업 근로자

직업관련성 낮음

1. 개요

근로자 ○○○는 2004년 7월 5일 □사업장에 입사하여 2006년 2월 17일까지 근무한 후 2008년 갑자기 용혈성 빈혈로 쓰러진 것을 계기로 전신홍반루푸스와 항인지질증 후군을 진단받았고. 2013년 5월에 전신홍반루푸스 치료(스테로이드 약물 복용)의 부 작용으로 인해 고관절 부위에 골괴사가 발생하였으며, 이로 인해 좌측 고관절 부위에 자가 뼈 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. 근로자는 □사업장 근무 당시 약품 조합 과 불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량의 독성 화학물질, 전자파 등에 노출되었고 장시간 근 로와 교대근무, 작업환경 스트레스에도 함께 노출되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여 2019년 9월 4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고. 근로복지공단 은 2020년 1월 9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.

2. 작업화경

근로자는 1년 7개월 동안 약품조합 및 불출업무를 수행하였고 시험 및 불출하는 과 정에서 납,은 망간 등 다양한 금속의 산화물과 잉크, 페인트 등 유기용제 및 고분자 바 인더(수지) 등을 취급하였다. 사업장은 분석실의 점도 테스트기와 약품조합실의 조합 기와 롤링기에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가동되었다. 전자산업에서는 전체공조장치 의 믹싱챔버에서 혼합되어 순환되는 공기를 통해 작업자가 다른 공정의 유해물질에 노출 될 수 있으나 상병과 관련된 결정체 산화규소는 입자상 물질으로, 근로자의 작업 공간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었다. 사업장은 근로자가 재직 당 시 2급 방진마스크,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였고 금속 및 유기용제 동시취급 시 방진/방 독 겸용마스크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. 반면에 근로자는 이물질방지용 마스크와 보호 장갑 및 방진복을 착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. 근로자는 근무 당시 1일 8시간 3교 대로 6일 근무 2일 휴식의 주기로 근무하였으며, 매월 평균 약 34시간 연장근무한 것 으로 추정된다.

 II. 암외 질환
 다. 기타 질환
 68
 69

3. 해부학적 분류

- 면역계 질환

4. 유해인자

- 화학적 요인

5. 의학적 소견

근로자는 2008년 갑자기 용혈성 빈혈로 쓰러진 것을 계기로 2008년에 대학병원에 서 SLE와 APS를 진단받았다고 진술하였다. 2013년 5월에 SLE 치료(스테로이드 약 물 복용) 부작용으로 인해 양측 고관절 부위에 골괴사가 발생하였고, 좌측고관절 부 위에 자가 뼈 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. SLE를 처음 진단받은 시점부터 현재 까지 지속적으로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. 2020년 1월 6일 에 근로복지공단 내과 자문의사는 자문의 소견서에서, 신청 상병 중 SLE는 진료기록 부에 충분한 진단근거가 확인된다고 하였고, 무혈성괴사의 경우 진료기록부의 검사 지 확인으로 진단이 가능하다고 하였다. 다만 APS의 경우 검사결과는 진단기준을 충 족하나, 진료기록부 상 혈전, 반복유산, 피부병변 등의 발생에 대한 언급이 없고, 과거 투약한 약물에서도 와파린 투여 기록이 없으며, APS에서 양성으로 확인되는 검사결 과는 SLE에서도 양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검사결과이므로. APS의 경우에는 확진하 기 어렵다고 하였다.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의료급여내역 상 근로자는 2015년 6 월 10일에 자연유산을 한 바 있으며, '세뇨관-간질성 신병증 동반한 전신성홍반루푸 스(2013.05,~2015.03.)', '급성세뇨관-간질신장염(2015.05,~2016.01.)', '무과립구증 (2014,03,20,)', '상세불명의 폐렴(2018,09,)', '범불안장애(2016,01,14,)', '재발성 우울 장애, 현존중등도(2011,09,08; 2012,12,01,)', '고프로락틴혈증(2016,07,28,)' 등이 확 인되었다. 근로자는 2남1녀의 형제관계 중 장녀로, 자가면역질환과 관련된 가족력은 없었고, 평소 음주와 흡연은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.

6. 고찰 및 결론

근로자는 만 23세가 되던 2008년 2월에 전신홍반성루푸스를 진단받았다. 근로자는 2004년 7월 5일 □사업장에 입사하여 2006년 2월 17일까지 디스플레이 생산공정의 약품조합 및 불출업무를 수행하였다.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으로는 결정형 실리카, 자외선, 스트레스 등이 알려져 있다. 근로자는 1년 7개월 간 약품조합실에 근무하면서 납을 포함한 금속과 에탄올 및 아세톤을 포함한 유기용제에 노출이 있었고, 그 외에 교대근무(3교대)와 직무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으나, 이러한 직업적 노출과 전신홍반성루푸스 발생 간의 연관성에 대한 선행 역학연구는 부족하였다.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. 끝.